

< 제도 개요 >

- (사전알리미)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
- (자발적보고) 의사가 불가피하게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

※ 근거법령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(생략)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3.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

<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 >

-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
  - \* '19~'21년(3년) 진행 중, 1차('19년)로 3종(식욕억제제, 졸피뎀, 프로포폴) 완료
-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\* 및 연구결과 검토('20.2월~)
  - \* '19년 연구분야 △식욕억제제(2월), △마취제(6월), △최면진정제(6월) 협의체 구성
- ‘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’ 심의를 통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배포('20.7월~)
  - \* 식욕억제제(8월), 마취제 및 최면진정제(9월)
- ‘안전사용 기준’ 마련과 함께 자발적 보고제 시행 및 관련단체·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책 홍보('20.8월~)
- 안전사용 기준에 따른 오남용 의심 취급자 분석('20.8월~)
  - \* 식욕억제제(8월~), 마취제 및 최면진정제(9월~)
- 오남용 사전알리미 대상 취급자 선별 및 사전알리미 서면 발송('20.9월~)
  - \* 식욕억제제(9월~), 마취제 및 최면진정제(10월~)
- 사전알리미 대상자의 마약류 취급정보 추적 분석 및 지속적 오남용 처방 취급자에 대한 기획감시('21년)